

구미시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4. 6. 28.

제 출 자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조례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3호중 “장애인, 경찰.소방.군인” 을
“장애인, 경찰.소방.군인, 보훈단체” 로 수정함.
- 조례 【별지제2호서식】 허가조건 제7항중 “예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를
“예치를 하여야 한다” 로 수정함.

3. 참 고 사 항

- 구미시체육시설운영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구미시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구미시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조례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3호중 “장애인, 경찰.소방.군인” 을
“장애인, 경찰.소방.군인, 보훈단체” 로 수정함.

안 조례 【별지제2호서식】 허가조건 제7항중 “예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를
“예치를 하여야 한다” 로 수정함.

수정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부속시설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 3. 불우청소년,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장애인, 군인을 위한 각종 경기 및 행사 <신 설> 4. <생 략>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 --- 장애인, 경찰.소방. 군인을 ----- ----- 4.구미시선수육성을 위한 훈련연습장 및 선수숙소 5. (현행 4호와 같음)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개정안과 같음) 1.~ 2. (개정안과 같음) 3. ----- --- 장애인, 경찰.소방.군인, 보훈단체를 ----- ----- 4.(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허 가 서 허 가 번 호 : 제 호 신청자 주소 : 성 명 : 사 용 시 설 : 사 용 목 적 : 사 용 일 시 :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사용을 허가 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 <table><tr><th colspan="4">체육시설사용허가서</th></tr><tr><td>허가번호</td><td></td><td>단 체 명</td><td></td></tr><tr><td>사용시설</td><td colspan="3"></td></tr><tr><td>신청자주소</td><td></td><td>성 명</td><td></td></tr><tr><td>사용기간</td><td></td><td>시 간</td><td></td></tr><tr><td>사용목적</td><td colspan="3" rowspan="2"></td></tr></table> 구미시체육시설운영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허 가 조 건 1. 허가를 받은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 합니다. 2. 사용자가 반입한 각종 물품의 도난분실파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관리소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3. 음식물은 당 소에서 지정한 장소의 일체 반입을 금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 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체육시설관리소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5.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행사에 따른 타기관 지원요청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합니다. 6. 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의무 승락은 사용허가신청서 제 출로 대신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전용사용료, 시설운영경비, 입장수익금, 쓰레기봉투구입, 원상복구비등은 행사전 예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8. 사용시 문구 해석상 의견차이는 사장의 해석에 따라 야 합니다.	체육시설사용허가서				허가번호		단 체 명		사용시설				신청자주소		성 명		사용기간		시 간		사용목적				【별지 제2호 서식】 <table><tr><th colspan="4">체육시설사용허가서</th></tr><tr><td>허가번호</td><td></td><td>단 체 명</td><td></td></tr><tr><td>사용시설</td><td colspan="3"></td></tr><tr><td>신청자주소</td><td></td><td>성 명</td><td></td></tr><tr><td>사용기간</td><td></td><td>시 간</td><td></td></tr><tr><td>사용목적</td><td colspan="3"></td></tr></table> 구미시체육시설운영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허 가 조 건 1. 허가를 받은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 합니다. 2. 사용자가 반입한 각종 물품의 도난분실파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관리소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3. 음식물은 당 소에서 지정한 장소의 일체 반입을 금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 건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체육시설관리소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5.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행사에 따른 타기관 지원요청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합니다. 6. 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의무 승락은 사용허가신청서 제 출로 대신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전용사용료, 시설운영경비, 입장수익금, 쓰레기봉투구입, 원상복구비등은 행사전 예치를 하여야 한다. 8. 사용시 문구 해석상 의견차이는 사장의 해석에 따라 야 합니다.	체육시설사용허가서				허가번호		단 체 명		사용시설				신청자주소		성 명		사용기간		시 간		사용목적			
체육시설사용허가서																																																		
허가번호		단 체 명																																																
사용시설																																																		
신청자주소		성 명																																																
사용기간		시 간																																																
사용목적																																																		
체육시설사용허가서																																																		
허가번호		단 체 명																																																
사용시설																																																		
신청자주소		성 명																																																
사용기간		시 간																																																
사용목적																																																		